

「서울특별시영등포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(안)」

檢 討 報 告 書

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.

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(안)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
□ 제안일자 및 제안자

- 제안일자 : 2005. 8. 25
- 제 안 자 : 영등포구청장

□ 제정(제안) 이유

-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의 추진과 노인복지시설의 이용·생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상·방법·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노인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.

□ 주 요 골 자

○ 지원대상 (안 제2조)

- 무료 및 실비 노인복지시설(양로·요양·여가시설·재가시설·노인보호전문기관)
- 노인의 날 등 기념행사 및 행사참여자
- 수급권노인·차상위계층노인·독거노인·기타 저소득노인

○ 지원내용 (안 제3조)

-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냉·난방비
-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를 위한 비품 및 기능보강사업비
-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
-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자 및 생활자에게 어버이날·노인의날·설날·추석 등 특정한 날에 필요한 물품 및 운영경비
- 어버이날·노인의날 등의 기념행사의 소요경비 및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물품
- 노인복지시설 및 수급권노인·차상위계층노인·독거노인·기타 저소득노인에 대하여 보건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비용 또는 생활에 필요한 물품

□ 관 련 법 규

- 노인복지법 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· 제47조(비용의 보조)
-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1조(노인의날등의 행사)· 제24조(비용의 보조)
-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표준안

[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2005-2(2005. 1. 7)]

□ 타 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

- 도봉구, 동작구, 은평구, 강북구, 성북구, 광진구

□ 검토 의견

-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포괄적 규정을 근거로 우리구의 세부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·방법·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노인복지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

○ 안 제2조에 지원대상에는

- 무료 및 실비 노인복지시설(양로·요양·여가시설 등)
- 노인의날등 기념행사 및 행사참여자
- 수급권노인·차상위계층노인·기타 저소득노인으로 규정하고 있고

○ 안 제3조에 지원내용으로는

-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냉·난방비
-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를 위한 비품 및 기능보강사업비
- 어버이날·노인의날 등의 기념행사의 소요경비 및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물품

- 노인복지시설 및 수급권노인·차상위계층노인·기타 저소득노인에 대하여 보건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상의가 있으시길 바라며,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(안)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5. 9. 5

보고자 : 이 남 식